〈자 료〉

國際換어음과 約束어음에 관한 統一法 草案

梁 承 圭*

一. 머 릿 말

어음과 手票는 일정한 金額의 支給을 목적으로 하는 有價證券으로서 資本主義社會의 모든 去來에서는 그 金錢의 支給決濟手段으로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 그리고 오늘날의 經濟生活에 있어서는 世界의 각 나라가 서로 交易을 증대함에 따라 國際去來上의 支給決濟를 위한 수단으로 어음과 手票의 이용이 빈번해지고 있다.

어음法과 手票法은 그 자체가 技術的인 것이고, 國際去來에서 필수적인 用具로 이용되고 있는 어음이나 手票에 관한 法은 다른 어떠한 法域에서 보다도 統一性이 가장 강하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어음法과 手票法의 統一運動은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시작되어 1930年에 「換어음과 約束어음에 관하여 統一法을 制定하는 條約」(Convention providing a uniform law for bills of exchange and promissory notes)과 1931年의 手票에 관한 統一法을 制定하는 條約」(Convention providing a uniform law for cheques)이 成立되어 獨佛 등 많은 國家가 이 條約을 받아들여 이를 國內法으로 制定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그러나 이 제네바의 統一條約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世界統一法의 길을 걷지 못하고 있다. 英國과 그 自治領의 각 나라는 1882年의 Bills of Exchange Act에 의하여 어음·手票를 規制하고 있고, 美國에서는 1896年에 州法統一委員會에서 작성한 流通證券法(Negotiable Instruments Law)이 많은 州에서 採擇하여 오다가, 현재는 루이지아나 州를 제외한 모든 州에서 1951年에 成立된 統一商法典(Uniform Commercial Code)을 채택하여 어음·手票에 관하여는 第3章 商業證券(Commercial Paper)의 규제를 받고 있다.

이와 같이 오늘날 世界의 어음과 手票에 관한 規制는 제네바의 統一條約에 따른 法律과 英國과 美國의 法律에 따라 각각 다른 法體制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國際去來의 支給決濟에 여러 가지 불편을 자아내는 것이고, 어떤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世界統一法의 필요를 절실히 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二. 國際換어음과 約束어음에 관한 統一法草案의 成立

1966年에 創設된 UN國際去來法委員會(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UNCITRAL)의 第1會期에서는 國際支給에 관한 法律(the law of international

*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副敎授

payments)을 그 作業計劃의 우선적인 課題(a priority topic)로서 포함시킬 것을 결정했다. 委員會는 U.N.事務總長을 통하여 國際私法統一硏究所(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the Unification of Private Law—UNIDROIT)가 다른 나라들이 관련되어 있는 去來에 있어서 流通證券에 관한 法律의 調和와 統一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채택할 수 있는 方案의 硏究를 수행할 準備를 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였고, UNIDROIT는 이에 同意하고 換어음과 手票法의 統一化의 可能性에 관한 豫備報告書를 제출했다.

1969年 3月 3日～31日에 제네바에서 열린 UNCITRAL의 第2會期에서는 流通證券에 관한 相異한 法體系에서 생기는 國際支給去來에서의 문제점에 관하여 討議하였고, 政府, 銀行 및 貿易硏究所 등을 통한 調査를 기초로 새로운 流通證券의 創造可能性에 관한 硏究를 계속하기로 하는 결정을 보았다. 이에 따라 U.N.事務總長을 통해서 IMF, UNIDROIT, 國際商工會議所(ICC) 등 關係機關의 協助를 얻어 政府, 銀行, 貿易硏究所 등에 광범한 質問書를 보내어 回答을 얻어냈다. 第3會期(1970)에는 事務總長에게 보낸 政府, 銀行, 貿易硏究所 등의 回信을 分析한 報告書를 검토하였으며, 第4會期(1971)에서는 國際去來에서 選擇的으로 사용하는 特別流通證券에 適用할 統一規則을 準備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UNCITRAL은 國際換어음에 관한 統一法草案에 註釋을 붙여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이 草案은 全文 80개 條文으로 구성되었고, 오로지 換어음에만 국한하여 約束어음이나 手票에 관한 규정을 포함시키고 있지 아니하다.

오늘날 國際去來에 있어서도 約束어음의 이용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 約束어음에 관한 規定을 포함시키는 것이 요망된다는 立場을 UNCITRAL은 밝히고 있다. 그리하여 이 草案은 UNCITRL의 實務委員會(Working Group)로 넘겨졌고, 1973年 1月 8日～19日에 열린 實務委員會에서는 國際換어음과 國際約束어음에 관한 統一法草案(Draft Uniform Law on International Bills of Exchange and International Promissory Notes)을 成案하기에 이른 것이다.

三. 草案의 構成

이 草案은 1971年에 제출된 國際換어음에 관한 統一法草案을 기초로 約束어음에 관한 規定을 덧붙인 것이라 할 수 있다. 草案의 全文은 8部 86개條로 나누어 國際去來에서 이용되는 換어음과 約束어음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第1部에서는 이 法의 「適用範圍와 方式」을 第2部에서는 「解釋」에 관한 문제를 규정하고 있다. 第3部는 「讓渡와 流通」으로서 背書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第4部는 當事者의 權利와 責任, 第5部는 證券의 提示, 拒絶(不渡) 및 遡求, 第6部는 責任의 免除, 第7部는 提訴期間, 第8部는 喪失한 證券에 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草案을 작성하는 데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UN事務總長을 통해서 광범하게 조사

한 國際的인 慣行이 그 土臺가 되어 있고, 1882年의 英國의 Bills of Exchange Act, 1930年의 換어음과 約束어음에 관한 제네바統一條約法 및 美國의 統一商法典 등이 그 基礎를 이루고 있다. 英美法에서는 手票에 관한 규정도 어음과 함께 規定하고 있으나, 제네바의 統一條約은 換어음과 約束어음에 관한 法과 手票法을 별개의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서 차이가 있다. 그런데 UNCITRAL이 작성한 國際換어음과 約束어음에 관한 統一法 草案은 手票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 있는 점에서는 1930年의 제네바條約과 같으나 換어음과 約束어음을 각 條文에서 통틀어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는 英美法의 體系와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이 草案을 전부 검토해 보면 美國의 U.C.C.의 영향이 짙게 풍기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1975年 UNCITRAL에서는 Working Group에 대하여 國際手票에 관하여 적용할 統一規則의 準備가 바람직한 것인지 또 手票法에 관한 規定을 換어음과 約束어음에 관한 統一法草案에 포함시키는가 아니면 별개의 法案으로 할 것인가를 검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1976年 3月 현재로 Working Group은 위의 草案에 관하여 檢討를 마치고 草案 第79條의 提訴期間에 관하여도 引受人, 作成人 또는 그의 保證人에 대하여는 4年이 경과하면 그 權利를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을 비롯하여 提訴期間에 관한 制限 등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앞으로 Working Group의 활동에 따라 國際어음과 手票에 관한 統一法이 成立되어 世界的인 統一法이 이루어질 날이 꼭 올 것이라고 기대된다.

끝으로 國際流通證券에 관한 實務委員會는 에질트, 프랑스, 인도, 멕시코, 나이제리아, 쏘련, 영국, 北아일런드 및 미국의 8개國 代表로 구성되어 있음을 소개해 둔다.

國際換어음과 國際約束어음에 관한 統一法 草案

第1部 適用範圍와 方式

第1條 ① 이 法은 國際換어음과 國際約束어음에 적용한다.

② 國際換어음은 다음의 要件을 갖춘 證券이다.

(a) 本文에 「···의 條約에 따라 發行한 이 國際換어음과 相換하여 支給하여 주십시요」라는 文句 (또는 이와 비슷한 文句)의 記載가 있는 것,

(b) 어떤 者(發行人)가 다른 者(支給人)에 대하여 特定人(受取人) 또는 그의 指示人에게 일정한 金額을 支給하라는 無條件의 指示의 記載가 있는 것,

(c) 一覽出給 또는 確定期出給인 것,

(d) 發行人에 의한 署名이 있는 것,

(e) 支給人이나 受取人 또는 支給地의 國家와 다른 國家에서 發行한 事實이 나타나 있는 것.

③ 國際約束어음은 다음의 要件을 갖춘 證券이다.

(a) 本文에 「···의 條約에 따라 發行한 이 國際約束어음과 相換하여 支給하겠읍니다」라는 文句 (또는 이와 비슷한 文句)의 記載가 있는 것,

(b) 어떤 者(作成人)가 特定人(受取人) 또는 그의 指示人에게 일정한 金額을 支給하겠다는 無條件의 約束의 記載가 있는 것.

(c) 一覽出給 또는 確定期出給인 것,

(d) 作成人에 의한 署名이 있는 것,

(e) 受取人 또는 支給地의 國家와 다른 國家에서 發行한 事實이 나타나 있는 것.

第2條 第1條 第2項 (e) 또는 第3項 (e)의 目的으로 證券上 記載된 表現이 정확하지 못한 것은 이 法의 適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第3條 이 法은 第1條 第2項 (e) 또는 第3項 (e)에 따라 國際換어음 또는 國際約束어음上 指定된 國家가 條約加入國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적용된다.

第2部 解　釋

第1節 通　則

第4條 이 法의 規定을 解釋하고 適用함에 있어서는 이 法의 國際的 性格과 그것의 解釋, 適用에 있어서의 統一性增進의 요구에 따르도록 하여야 한다.

第5條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持參人(Bearer)」이라 함은 白地式으로 背書된 換어음이나 約束어음을 占有하는 者를 말한다.

② 「換어음(Bill)」이라 함은 이 法이 적용되는 國際換어음을 말한다.

③ 「約束어음(Note)」이라 함은 이 法이 적용되는 國際約束어음을 말한다.

④ 「證券(Instrument)」이라 함은 이 法이 적용되는 國際換어음 또는 國際約束어음을 말한다.

⑤ (a) 「背書(Endorsement)」라 함은 受取人, 受取人으로부터의 被背書人, 또는 일련의 連續한 背書로 指示된 者에 의하여 證券上 記載되는 단순한 署名 또는 證券에 支給받을 者를 指示하는 文句를 附記한 署名을 말한다. 背書人의 署名만 있는 背書는 그 證券은 占有者에게 支給한다는 것을 뜻한다.

(b) 「白地式背書(Endorsement in blank)」라 함은 背書人의 署名만 있거나, 證券의 所持人에게 支給하라는 뜻의 文句가 記載되어 있는 背書를 말한다.

(c) 「記名式背書(Special endorsement)」라 함은 證券에 支給받을 者를 指定하는 背書를 말한다.

⑥ 「所持人(Holder)」이라 함은 證券을 所持하고 있는 證券의 受取人 또는 被背書人을 말한다.

⑦ 「發行(Issue)」이라 함은 所持人으로서 證券을 取得하는 者에 대하여 최초로 交付하는 것을 말한다.

⑧ 「當事者(Party)」라 함은 證券의 當事者를 말한다.

⑨ 「保護받는 所持人(protected holder)」이라 함은 所持人이 證券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權利나 抗辯 또는 支給이 拒絕되었다는 事實을 알지 못하고, 證券面上 完全하며 正規的이고 支給期限이 이르지 아니한 證券을 取得한 證券의 所持人을 말한다.

第6條 이 法에서는 어떤 事實을 실제로 알고 있는 경우 [또는 認識의 缺如가 그에 대한 (중대한) 過失로 인한 경우] [또는 通知를 받았거나 또는 事實이 證券面上 명백히 나타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은 그 事實을 「認識(knowledge)」한 것으로 본다.

第2節 形式的 要件의 解釋

第7條 證券에 의하여 支給될 金額은 다음의 方法으로 支給하기로 된 것일지라도 一定한 金額이다.

(a) 利子附; 또는

(b) 定期分割支給; 또는

(c) 指定換率에 의하여 또는 證券上 指示된 바에 따라 決定된 換率에 의하여 支給하는 것.

第8條 ① 文字로 記載한 證券金額과 數字로 記載한 證券金額에 相違가 있으면 支給할 金額은 文字로 記載한 金額이다.

② [證券金額이 證券이 發行 또는 作成된 國家와 支給될 國家에 있어서 同一한 名稱이지만 價值가 다른 通貨로 特定되어 있으면, 名稱은 支給될 國家의 通貨의 것으로 본다. 〔支給할 場所가 證券面에

指定되어 있는 것을 條件으로 하여.]]

③ 證券이 利子附로 支給할 것이지만 利子起算日字의 정함이 없으면 利子는 證券의 附記日로부터 起算한다. [그리고 證券에 日字의 記載가 없으면 發行한 날로부터 起算한다.]

④ 利率의 정함이 없이 利子附로 支給하도록 된 證券에서 利率은 單利 年 [5]分으로 한다.

第 9 條 ① 다음과 같은 경우에 證券은 一覽出給證券이다.

(a) 「請求時」나 「一覽時」 또는 「提示時」에 支給하도록 되어 있거나 이와 비슷한 文句가 記載되어 있는 경우.

(b) 支給日의 記載가 없는 경우.

② 滿期後에 引受, 背書 또는 保證된 證券은 引受人, 背書人 또는 保證人에 관하여는 一覽出給證券이다.

③ 換어음이 그 文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時期에 支給되는 것이라면 確定期出給證券이다.

(a) 一定한 날이나 一定한 날 이후 一定期間에 또는 어음日字 이후 一定한 期間에 支給하는 것.

(b) 一覽後 一定期間에 支給하는 것.

(c) [分割支給의 어느 期라도 不履行이 있으면 支給되지 아니한 殘額은 즉시 滿期가 된다는 정함이 어음에 明記되어 있는 경우라도 그 후의 日字에 分割支給하는 것.]

④ 約束어음이 그 文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時期에 支給되는 것이라면 確定期出給證券이다.

(a) 一定한 날이나 一定한 날 이후 一定期間에 또는 어음日字 이후 一定期間에 支給하는 것.

(b) [分割支給의 어느 期라는 不履行이 있으면 支給되지 아니한 殘額은 즉시 滿期가 된다는 정함이 어음에 明記되어 있는 경우라도 그 후의 日字에 分割支給하는 것.]

⑤ 日字 이후 一定期間에 支給하는 證券의 支給時期는 證券이 先日字이거나 後日字이거나 관계없이 證券上 정하여진 日字에 따라 결정된다.

第10條 ① 換어음은

(a) 2人 또는 그 이상의 支給人에게 發行할 수 있다.

(b) 2人 또는 그 이상의 發行人에 의하여 署名될 수 있다.

(c) 2人 또는 그 이상의 受取人에게 支給할 수 있다.

② 約束어음은

(a) 2人 또는 그 이상의 作成人이 作成할 수 있다.

(b) 2人 또는 그 이상의 受取人에게 支給할 수 있다.

③ 證券이 2人 또는 그 이상의 受取人에게 選擇的으로 支給하는 것이면 그들 중 누구에게도 支給할 수 있으며 그들 중 證券을 所持하는 누구라도 所持人의 權利를 行使할 수 있다. 그 밖의 경우에 證券은 全員에게만 支給되고 所持人의 權利도 全員에 의해서만 行使될 수 있다.

第 3 節 未完成證券의 完成

第11條 ① 다음과 같은 記載가 있는 證券의 占有者는 發行人 또는 作成人으로부터 第1條 第2項 第3項에 정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要件에 관하여 欠缺된 부분을 補充하는 權限을 받은 것으로 推定하며, 完成된 證券은 換어음 또는 約束어음으로서 有效하다.

(a) 本文에 「・・・의 條約에 따라 發行한 이 國際換어음과 相換하여 支給하여 주십시요」라는 文句 또는 「・・・의 條約에 따라 作成한 이 國際約束어음과 相換하여 支給하겠읍니다」라는 文句 (또는 이와 비슷한 文句)의 記載가 있는 것.

(b) 發行人 또는 作成人의 署名이 있는 것.

② 그러한 記載가 주어진 權限 이외의 方法으로 完成된 경우에 그 權限의 欠缺은 權限의 欠缺을 알지 못하고 證券을 取得한 所持人에 대한 抗辯으로 주장할 수는 없다.

第3部 讓渡 및 流通

第12條 證券의 讓渡는 讓渡人이 證券上 가지는 權利를 讓受人에게 이전한다.

第13條 ① 證券은 다음의 方法으로 讓渡될 때에 流通된다.

(a) 背書人이 被背書人에게 證券에 背書하여 交付하는 것.

(b) 최후의 背書가 白地式인 때에 證券의 단순한 交付가 있는 것.

② 讓受人에게 證券上의 責任에 관하여 權利를 主張하거나 抗辯을 할 수 있는 無能力, 詐欺, 强迫 또는 錯誤가 있는 상황에서 讓受人이 證券을 取得하였다 하더라도 流通은 讓受人을 所持人으로 하는데 有效하다.

第14條 證券이 讓受人을 所持人으로 하는데 필요한 背書없이 讓渡되면 讓受人은 讓渡人에게 證券에 背書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第15條 白地式으로 背書된 證券의 所持人은 證券에 자기 또는 他人에게 支給할 것을 記載함으로써 白地式背書를 記名式背書로 變更할 수 있다.

第16條 發行人, 作成人 또는 背書人이 證券 또는 背書에 「讓渡禁止」, 「流通禁止」, 「指示禁止」 등의 讓渡禁止文句 또는 이와 비슷한 文句를 기재하였을 때에는 證券은 推尋의 目的 이외에는 流通될 수 없다.

第17條 條件에 따라 證券을 流通시키는 뜻의 背書는 條件의 成就 여부와 관계없이 有效하게 證券을 流通시킬 수 있다.

第18條 支給額의 一部만을 讓渡할 목적으로 하는 背書는 背書로서의 效力이 없다.

第19條 둘 또는 그 이상의 背書가 있는 경우 反證이 없는 한 각 背書는 證券上 記載된 指示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推定된다.

第20條 ① 推尋委任背書가 「推尋을 위하여」, 「委任을 위하여」, 「推尋의 댓가로」, 「代理에 의하여」의 文句 또는 이와 비슷한 文句를 포함하여 被背書人에게 證券을 推尋할 權限을 주는 경우에 被背書人은,

(a) 같은 文句로 證券에 背書만 할 수 있다.

(b) 또 證券으로부터 생기는 모든 權利를 行使할 수 있으며 背書人에 대하여 主張할 수 있는 모든 權利와 抗辯에 對抗받는다.

② 推尋委任背書人은 證券에 관하여 그 후의 所持人에게 責任을 지지 아니한다.

第21條 證券이 前者에게 讓渡 또는 流通된 경우에 그 者는 이 法의 規定에 따라 證券을 再發行하거나 계속 讓渡 또는 流通시킬 수 있다.

第22條 ① 證券面上 背書가 連續된 證券을 取得한 者는 背書 가운데 하나가 僞造된 것이거나 無權代理人이 署名한 것일지라도 僞造 또는 代理權 欠缺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所持人이 된다.

② 背書가 僞造되었거나 無權代理人에 의하여 署名되었을 때 發行人이나 作成人 또는 自己의 背書가 僞造되었거나 無權代理人에 의하여 署名된 背書人은 僞造者 또는 無權代理人 그리고 僞造者나 無權代理人으로부터 證券을 取得한 者에 대하여 前項의 適用으로 말미암아 입게 된 모든 損害의 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③ 第28條 (a) 및 (b)의 規定에 따라 僞造된 背書 또는 無權代理人에 의한 背書는 署名이 僞造된 者 또는 證券에 背書한 당시 無權代理人이 本人을 위하여 한다고 주장한 그 本人에 대하여 어떠한 責任도 지울 수 없다.

第4部 權利 및 責任

第1節 所持人 및 保護받는 所持人의 權利

第23條 證券에 署名한 者는 이 法의 規定에 따라 證券의 所持人에 대하여 責任을 진다.

第24條 ① 保護받는 所持人이 아닌 所持人의 證券上 權利는 다음의 對抗을 받게 된다.

(a) 어느 當事者가 證券에 대하여 가지는 모든 有效한 權利의 主張, 및

(b) 어느 當事者가 契約上 또는 이 法에 따라 主張할 수 있는 모든 抗辯.

② 각 當事者는 自己의 直前의 當事者에 대하여 가지는 抗辯이 證券과 관련없는 法律關係에 근거를 둔 것인 경우에는 그 抗辯을 가지고 그 후의 所持人에 대한 責任을 회할 수 없다.

③ 각 當事者는 第3者 자신이 所持人에게 證券에 대한 權利를 主張하였거나 그 當事者에게 通知한 事實이 없는 한 第3者가 證券에 대하여 有效한 權利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所持人에 대한 責任을 회할 수 없다.

第25條 ① 保護받는 所持人의 證券上 權利는 다음의 對抗을 받지 아니한다.

(a) 어느 當事者가 證券에 대하여 가지는 모든 權利의 主張.

(b) 어느 當事者의 證券上 義務를 無效로 만드는 事情에 근거를 두지 아니한 그 當事者의 모든 抗辯,

(c) 證券이 引受拒絕 또는 支給拒絕에 의하여 拒絕되었거나 適法하게 拒絕證書가 作成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主張하는 責任의 免除 또는 欠缺의 모든 抗辯

② 保護받는 當事者에 의한 證券의 讓渡는 讓受人이 證券에 대한 權利의 主張이나 抗辯을 생기게 한 去來에 參加한 경우에는 讓受人에게 保護받는 所持人의 權利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第26條 ① 모든 所持人은 保護받는 所持人으로 推定된다.

② 抗辯의 存在가 立證된 경우에는 所持人은 自己가 保護받는 所持人이라는 事實에 대한 立證責任을 진다.

第2節 當事者의 責任

A. 通 則

第27條 ① 證券에 署名하지 아니한 者는 證券上 責任을 지지 아니한다.

② 自己自身이 아닌 이름으로 署名한 者는 自身의 이름으로 署名한 것과 같이 責任을 진다.

③ 署名은 自署로 하든지 複寫, 打字, 記號, 또는 그 밖의 다른 機械的 手段으로 할 수 있다.

第28條 證券上 僞造된 署名은 自己의 署名이 僞造된 者에게 證券上 어떠한 責任도 지우지 아니한다. 그러나 被僞造者는 다음의 경우에는 그 責任을 진다.

(a) 被僞造者가 그 署名을 追認하였을 경우,

(b) 僞造의 事實을 알지 못하는 所持人에게는 그 所持人이나 中間의 背書人에게 자신의 行爲에 의하여 그 署名이 自身의 것이거나 權限있는 代理人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이라고 믿을 만한 理由를 준 경우.

第29條 ① 證券이 중대하게 變造되었을 경우에

(a) 중대한 變造에 이어 證券에 署名한 當事者는 變造된 文言에 따라 責任을 진다.

(b) 중대한 變造 전에 證券에 署名한 當事者는 原文言에 따라 責任을 진다.

1) 중대한 變造를 自身이 하였거나 承認하였거나 同意한 각 當事者는 變造된 文言에 따라 責任을 진다.

2) 自己의 行爲를 통하여 중대한 變造를 容易하게 한 각 當事者는 變造의 事實을 알지 못하는 所持人에게 變造된 文言에 따라 責任을 진다.

② 이 法에서는 어떤 점에서든 모든 當事者의 證券上 記載된 約束에 變更을 加하는 어떠한 變造도 중대한 것이 된다.

第30條 ① 證券은 代理人에 의하여 署名될 수 있다.

② 代理人이 署名할 權限을 가지고 證券上 代理人 資格을 표시하고 한 代理人에 의한 署名은 代理人이 아닌 本人에게 責任이 있다.

③ 署名할 權限없는 代理人에 의한 署名 또는 代理할 權限은 있으나 證券上 代理人 資格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한 代理人에 의한 署名은 本人이 아닌 그 代理人에게 責任이 있다.

④ 前項에 따라 責任을 지고 證券을 支給한 代理人은 本人이 證券을 支給하였더라면 가지게 될 權利와 동일한 權利를 갖는다.

第31條 ① 換어음의 모든 當事者의 [作成人을 제외한] 約束어음의 모든 當事者는 證券上 明示된 約定으로 自己의 責任을 排除 또는 制限할 수 있다.

② 前項에 의한 責任의 排除나 制限은 約定한 當事者에 관하여만 效力이 있다.

第32條 證券에 署名하는 者는 證券上 명백히 다른 어떤 資格으로 署名하였다는 事實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한 背書人으로서 責任을 진다.

第33條 ① 換어음의 모든 發行人, 引受人, 背書人, 保證人은 換어음上 連帶하여 또 單獨으로 責任을 진다.

② 約束어음의 모든 作成人, 背書人, 保證人은 約束어음上 連帶하여 또 單獨으로 責任을 진다.

B. 發 行 人

第34條 發行人은 引受拒絕이나 支給拒絕에 의하여 換어음이 拒絕된 경우와 모든 필요한 拒絕證書가 작성된 경우에 換어음의 所持人 또는 換어음을 占有하고 있는 자기의 모든 後者와 第69條 第2項, 第70條, 第71條나 第76條에 의하여 證券上 責任이 免除된 자기의 모든 後者에게 어음金額과 第67條 (b). 또는 第68條에 따라 請求할 수 있는 모든 利子와 費用을 支給할 것을 擔保한다.

C. 作 成 人

第34條의 2 作成人은 所持人에게 다음의 金額을 支給할 것을 擔保한다.

(a) 滿期에는 約束어음金額

(b) 滿期 후에는 約束어음金額과 第67條 (b) 또는 第68條에 따라 請求할 수 있는 모든 利子와 費用

D. 支給人과 引受人

第35條 ① 支給人은 引受할 때까지는 換어음上 責任을 지지 아니한다.

② 換어음의 發行이나 背書는 그것만으로 支給人의 手中에 있는 資金을 所持人에게 讓渡하는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第36條 引受人은 所持人에게 다음의 金額을 支給할 것을 擔保한다.

(a) 滿期에는 換어음金額

(b) 滿期 후에는 換어음金額과 第67條 (b) 또는 第68條에 따라 請求할 수 있는 모든 利子와 費用

第37條 引受는 換어음에 記載되어야 하며 支給人의 署名만으로 또는 「引受되었음」이라는 文句나 이와 비슷한 文言을 附記한 支給人의 署名으로 할 수 있다.

第38條 ① 換어음은 다음의 경우에도 引受할 수 있다.

(a) 發行人의 署名이 있기 전, 또는 그 밖에 換어음이 完成되지 아니한 경우.

(b) 滿期의 前後를 묻지 않고 또는 引受拒絕이나 支給拒絕에 의하여 拒絕된 후.

② 一覽後 定期出給으로 發行된 換어음이 引受되고 引受人이 引受日字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換어음의 發行 전의 發行人 또는 所持人이 引受日字를 補充할 수 있다.

③ 一覽後 定期出給으로 發行된 換어음이 引受拒絕에 의하여 拒絕되고 支給人이 그 후에 引受한 경우에 所持人은 支給人에 대한 引受를 위한 提示日字를 引受日字로 定할 수 있다.

第39條 ① 引受는 無條件으로 또는 制限的으로 할 수 있다.

② 無條件引受에 의하여 支給人은 換어음의 文言에 따라 支給할 것을 擔保한다.

③ 制限的 引受에 의하여 支給人은 引受에서 明示的으로 밝힌 文言에 따라 換어음을 支給할 것을 擔保한다. 引受는 다음의 경우에는 制限的이다.

(a) 引受人에 의한 支給이 記載된 條件의 成就에 依存한다는 條件附引受

(b) 換어음金額의 一部만을 引受한다는 一部引受

② 約束어음의 支給을 위한 提示는 背書人 또는 그의 保證人으로 하여금 約束어음上 責任을 지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③ 支給을 위한 提示는 引受人으로 하여금 責任을 지도록 하기 위하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第53條 證券은 다음의 規則에 따라 提示된 경우에는 適法하게 支給을 위하여 提示된 것이다.

(a) 證券의 所持人은 경우에 따라서 發行人이나 引受人 또는 作成人에게 支給을 위하여 證券을 提示하여야 한다.

(b) 2人 또는 그 이상을 支給人으로 한 換어음은 2人 또는 그 이상의 支給人에 의하여 引受되었을 때, 또는 約束어음이 2人 또는 그 이상의 作成人에 의하여 署名되었을 때에는 證券을 그들 중 어느 1人에게 提示하면 충분하다. 支給場所가 特定되어 있으면 提示는 그 場所에서 하여야 한다.

(c) 支給人이나 引受人 또는 作成人이 死亡하였고 支給場所가 特定되어 있지 않으면 提示는 適用法律에 따라 그의 遺産을 管理할 資格이 있는 者 또는 그 代理人에게 하여야 한다.

(d) 一覽出給이 아닌 證券은 支給할 날 또는 이에 이은 2 去來日의 하루에 支給을 위하여 提示하여야 한다.

(e) 一覽出給證券은 特定日로부터 1年 안에 그리고 證券에 日字가 없으면 發行日로부터 1年 안에 支給을 위하여 提示하여야 한다.

(f) 證券은 다음의 場所에서 支給을 위하여 提示하여야 한다.

1) 證券에 特定된 支給場所,

2) 支給場所가 特定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證券上 指定된 支給人이나 引受人 또는 作成人의 住所地,

3) 支給場所가 特定되어 있지 아니하고 支給人이나 引受人 또는 作成人의 住所도 指定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支給人이나 引受人 또는 作成人의 主된 營業所 또는 居住地.

第54條 ① 支給을 위한 提示의 遲滯가 所持人의 責任없는 事由로 생겼을 때에는 그 遲滯의 責任은 免除된다. 遲滯의 原因이 없어진 경우에는 提示는 지체없이 [・・・日 안에] 提示하여야 한다.

② 支給을 위한 提示는 다음의 경우에는 免除된다.

(a) 發行人, 作成人, 背書人, 또는 保證人이 明示 또는 默示로 提示를 拋棄하였을 때, 그러한 拋棄는 拋棄한 當事者만을 拘束한다.

(b) 證券이 一覽出給이 아니고 提示의 遲滯原因이 滿期 후 30日 이상 계속되는 때.

(c) 證券이 一覽出給이고 遲滯原因이 支給을 위한 提示의 時限經過 후 30日 이상 계속되는 때.

(d) 換어음의 支給人이나 引受人 또는 約束어음의 作成人이 證券을 發行한 후 提示하여야 하는 國家에서 破產節次가 開始되었을 때.

(e) 換어음에 관하여, 換어음이 引受拒絕에 의한 拒絕證書가 作成되었을 때.

(f) 發行人에 관하여, 支給人이나 引受人이 發行人과의 사이에서처럼 換어음을 支給할 義務를 지지 아니하고 發行人이 換어음을 提示하여도 支給될 것이라고 믿을 理由가 없을 때.

第55條 ① 換어음이 適法하게 支給을 위하여 提示되지 아니한 경우에 發行人, 背書人과 그들의 保證人은 換어음上 責任을 지지 아니한다.

② 約束어음이 適法하게 支給을 위하여 提示되지 아니한 경우에 背書人과 그의 保證人은 約束어음上 責任을 지지 아니한다.

第56條 ① 證券은 다음의 경우에는 支給拒絕에 의하여 不渡가 된다.

(a) 支給이 適法한 提示에 대하여 拒絕된 때 또는 所持人이 이 法에 따라 權限있는 支給을 받을 수 없는 때.

(b) 支給을 위한 提示가 第54條 第2項에 따라 免除되고 證券이 滿期를 경과하여 支給되지 아니한 때.

(c) [換어음이 支給人의 住所地나 營業所 이외의 場所에서 支給하도록 發行되었을 때.]

② 所持人은 다른 어떠한 換어음도 引受를 위하여 提示할 수 있다.

第47條 ① 發行人, 背書人 또는 保證人은 換어음에 引受를 위한 提示를 禁止하거나 特定日 전 또는 特定事由가 생기기 전에는 提示를 禁止하는 뜻을 기재할 수 있다.

② 換어음이 前項에서 許容된 경합에도 불구하고 引受를 위하여 提示되어 引受가 拒絕되어도, 換어음은 그로 말미암아 그러한 制限을 가한 當事者에 대하여는 拒絕된 것으로 되지 아니한다.

③ 支給人이 引受를 위한 提示를 禁止하는 規定에도 불구하고 換어음을 引受할 경우에 그 引受는 有效하다.

第48條 換어음은 다음의 規則에 따라 提示된 경우에는 適法하게 引受를 위하여 提示된 것이다.

(a) 所持人은 換어음을 支給人에게 提示하여야 한다.

(b) 2人 또는 그 이상의 支給人으로 한 換어음은 換어음에 명백히 다른 定함을 두지 아니한 한 그들 중 어느 1人에게 提示할 수 있다.

(c) 支給人이 死亡한 경우 提示는 適用法律에 따라 그의 遺産을 管理할 權限이 있는 者나 그 代理人에게 할 수 있다.

(d) 支給人에 대한 破産節次가 開始되었을 때에는 提示는 適用法律에 따라 그를 代理할 權限이 있는 者에게 할 수 있다.

(e) 換어음이 確定日 또는 確定日後 定期出給으로 發行되었을 경우에는 모든 引受를 위한 提示는 滿期 전에 하여야 한다.

(f) 一覽後 定期出給으로 發行된 換어음은 發行日로부터 1年 안에 引受를 위하여 提示하여야 한다.

(g) 發行人, 背書人 또는 保證人이 引受를 위한 提示日字 또는 時限을 정한 換어음은 그 정하여진 日字에 또는 정하여진 時限 안에 提示하여야 한다.

(h) 發行人, 背書人 또는 保證人이 引受를 위한 提示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였으나 提示日時를 정하지 아니한 換어음 [또는 支給人의 營業所나 住所地 이외의 場所에서 支給하도록 發行되었고 一覽出給이 아닌 換어음]은 滿期 전에 提示하여야 한다.

第49條 引受를 위한 提示는 다음의 경우에 免除된다.

(a) 支給人이 死亡하였거나 破産節次가 開始된 경우 또는 換어음을 引受할 資格을 가진 者가 없는 경우.

(b) 상당한 注意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引受를 위한 提示時限 안에 提示할 수 없는 경우.

(c) 當事者가 그러한 當事者에 관하여 明示 또는 默示로 提示를 抛棄하였을 경우.

第50條 ① 第46條 第1項 (a)에 따라 引受를 위한 提示를 하여야 하는 換어음이 適法하게 提示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換어음에 提示하여야 한다고 기재한 當事者는 換어음上 責任을 지지 아니한다.

② 第46條 第1項 (b)나 (c)에 따라 引受를 위한 提示를 하여야 하는 換어음이 適法하게 提示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發行人, 背書人 및 保證人은 換어음上 責任을 지지 아니한다.

第51條 ① 換어음은 다음의 경우에는 引受拒絕에 의하여 不渡가 된다.

(a) 引受가 適法한 提示에 대하여 拒絕된 때 또는 所持人이 이 法에 따라 權限이 있는 引受를 받을 수 없을 때.

(b) 引受를 위한 提示가 第49條에 따라 免除되었고 換어음이 引受되지 아니한 때.

② 換어음이 引受拒絕에 의하여 不渡되었을 때 所持人은 第57條의 規定에 따라 發行人, 背書人 및 保證人에 대하여 직접 遡求權을 행사할 수 있다.

第 2 節　支給을 위한 提示

第52條 ① 換어음의 支給을 위한 提示는 發行人, 背書人 또는 保證人으로 하여금 換어음上 責任을 지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② 約束어음의 支給을 위한 提示는 背書人 또는 그의 保證人으로 하여금 約束어음上 責任을 지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③ 支給을 위한 提示는 引受人으로 하여금 責任을 지도록 하기 위하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第53條 證券은 다음의 規則에 따라 提示된 경우에는 適法하게 支給을 위하여 提示된 것이다.

(a) 證券의 所持人은 경우에 따라서 發行人이나 引受人 또는 作成人에게 支給을 위하여 證券을 提示하여야 한다.

(b) 2人 또는 그 이상을 支給人으로 한 換어음은 2人 또는 그 이상의 支給人에 의하여 引受되었을 때, 또는 約束어음이 2人 또는 그 이상의 作成人에 의하여 署名되었을 때에는 證券을 그들 중 어느 1人에게 提示하면 충분하다. 支給場所가 特定되어 있으면 提示는 그 場所에서 하여야 한다.

(c) 支給人이나 引受人 또는 作成人이 死亡하였고 支給場所가 特定되어 있지 않으면 提示는 適用法律에 따라 그의 遺産을 管理할 資格이 있는 者 또는 그 代理人에게 하여야 한다.

(d) 一覽出給이 아닌 證券은 支給할 날 또는 이에 이은 2 去來日의 하루에 支給을 위하여 提示하여야 한다.

(e) 一覽出給證券은 特定日로부터 1年 안에 그리고 證券에 日字가 없으면 發行日로부터 1年 안에 支給을 위하여 提示하여야 한다.

(f) 證券은 다음의 場所에서 支給을 위하여 提示하여야 한다.

1) 證券에 特定된 支給場所,

2) 支給場所가 特定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證券上 指定된 支給人이나 引受人 또는 作成人의 住所地,

3) 支給場所가 特定되어 있지 아니하고 支給人이나 引受人 또는 作成人의 住所도 指定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支給人이나 引受人 또는 作成人의 主된 營業所 또는 居住地.

第54條 ① 支給을 위한 提示의 遲滯가 所持人의 責任없는 事由로 생겼을 때에는 그 遲滯의 責任은 免除된다. 遲滯의 原因이 없어진 경우에는 提示는 지체없이 [・・・日 안에] 提示하여야 한다.

② 支給을 위한 提示는 다음의 경우에는 免除된다.

(a) 發行人, 作成人, 背書人, 또는 保證人이 明示 또는 默示로 提示를 拋棄하였을 때, 그러한 拋棄는 拋棄한 當事者만을 拘束한다.

(b) 證券이 一覽出給이 아니고 提示의 遲滯原因이 滿期 후 30日 이상 계속되는 때.

(c) 證券이 一覽出給이고 遲滯原因이 支給을 위한 提示의 時限經過 후 30日 이상 계속되는 때.

(d) 換어음의 支給人이나 引受人 또는 約束어음의 作成人이 證券을 發行한 후 提示하여야 하는 國家에서 破產節次가 開始되었을 때.

(e) 換어음에 관하여, 換어음이 引受拒絕에 의한 拒絕證書가 作成되었을 때.

(f) 發行人에 관하여, 支給人이나 引受人이 發行人과의 사이에서처럼 換어음을 支給할 義務를 지지 아니하고 發行人이 換어음을 提示하여도 支給될 것이라고 믿을 理由가 없을 때.

第55條 ① 換어음이 適法하게 支給을 위하여 提示되지 아니한 경우에 發行人, 背書人과 그들의 保證人은 換어음上 責任을 지지 아니한다.

② 約束어음이 適法하게 支給을 위하여 提示되지 아니한 경우에 背書人과 그의 保證人은 約束어음上 責任을 지지 아니한다.

第56條 ① 證券은 다음의 경우에는 支給拒絕에 의하여 不渡가 된다.

(a) 支給이 適法한 提示에 대하여 拒絕된 때 또는 所持人이 이 法에 따라 權限있는 支給을 받을 수 없는 때.

(b) 支給을 위한 提示가 第54條 第2項에 따라 免除되고 證券이 滿期를 경과하여 支給되지 아니한 때.

② 換어음이 支給拒絕에 의하여 不渡가 된 경우에는 所持人은 第57條의 規定에 따라 發行人, 背書人 및 保證人에 대하여 遡求權을 행사할 수 있다.

③ 約束어음이 支給拒絕에 의하여 不渡가 된 경우에는 所持人은 第57條의 規定에 따라 背書人과 그의 保證人에 대하여 遡求權을 행사할 수 있다.

第3節 遡　求

第57條 換어음이 引受拒絕이나 支給拒絕에 의하여 不渡가 된 때 또는 約束어음이 支給拒絕에 의하여 不渡가 된 때에 所持人은 換어음이나 約束어음이 第58條 내지 第61條의 規定에 따라 適法하게 不渡로 인한 拒絕證書를 作成시킨 후에만 遡求權을 행사할 수 있다.

第58條 ① 拒絕證書는 支給人, 引受人 또는 作成人 또는 支給擔當者를 두어 支給場所가 指定된 證券에 있어서는 그 支給擔當者가 證券에 署名하고 날자를 기재한 宣言에 의하여 作成된다. 宣言은 引受나 支給이 拒絕되었다는 뜻을 나타낸 것이어야 한다.

② 拒絕證書는 다음의 경우에는 이 條 第3項과 第4項에서 規定된 바와 같은 公正證書에 의하여 作成된다.

(a) 前項에서 規定한 宣言이 拒絕되었거나 받을 수 없을 때.

(b) 證券이 公正證書의 作成을 요구하고 있을 때.

(c) 所持人이 前項에 規定한 宣言에 의하여 拒絕證書를 作成하지 아니한 때.

③ 公正證書라 함은 換어음의 引受나 支給 또는 約束어음의 支給이 拒絕된 場所의 法律에 따라 流通證券의 不渡를 確認한 權限이 있는 者에 의하여 作成되고 署名되어 날자가 기재된 不渡의 陳述書이다. 陳述書에는 다음의 事項을 기재하여야 한다.

(a) 證券에 拒絕證書의 作成을 요구한 者.

(b) 拒絕證書作成의 곳과 날자.

(c) 證券이 拒絕된 原因 또는 理由, 행하여진 要求 및 주어진 答辯, 또는 支給人, 引受人 또는 作成人을 發見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事實.

④ 公正證書는

(a) 證券 그 자체에 作成할 수 있다.

(b) 독립된 文書로서 作成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그 文書는 不渡가 된 證券과 명백하게 일치하는 것이어야 한다.

第59條 ① 引受拒絕이나 支給拒絕에 의한 換어음의 不渡로 인한 拒絕證書는 換어음이 不渡된 날 또는 이에 이은 2 去來日 중의 하루에 作成하여야 한다.

② 支給拒絕에 의한 約束어음의 不渡로 인한 拒絕證書는 約束어음이 不渡된 날 또는 이에 이은 2 去來日 중의 하루에 作成하여야 한다.

③ [公正證書는 證券이 不渡된 場所에서 作成되어야 한다.]

第60條 ① 引受拒絕이나 支給拒絕로 인하여 拒絕證書가 作成되어야 하는 換어음에 있어서 適法하게 拒絕證書가 作成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發行人, 背書人과 그들의 保證人은 換어음上 責任을 지지 아니한다.

② 支給拒絕로 인하여 拒絕證書가 作成되어야 하는 約束어음에 있어서 適法하게 拒絕證書가 作成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背書人과 그의 保證人은 約束어음上 責任을 지지 아니한다.

第61條 ① 引受拒絕이나 支給拒絕에 의한 不渡로 인한 換어음의 拒絕證書作成 또는 支給拒絕에 의한 不渡로 인한 約束어음의 拒絕證書作成의 遲滯가 所持人의 責任없는 事由로 생겼을 때에는 그 遲滯의 責任은 免除된다. 遲滯의 原因이 없어진 다음에 拒絕證書는 지체없이 [・・・日 안에] 作成되어야 한다.

② 引受拒絕이나 支給拒絕에 의한 不渡로 인한 拒絕證書의 作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免除된다.

(a) 發行人, 作成人, 背書人 또는 保證人이 明示 또는 默示로 拒絕證書의 作成을 拋棄하였을 때, 拋棄는 拋棄한 當事者만을 拘束한다.

(b) 拒絕證書作成의 遲滯原因이 滿期 후 30日 이상 계속되거나, 또는 一覽出給證券의 경우 遲滯原因이 支給을 위한 提示時限의 經過 후 30日 이상 계속되는 경우.

(c) 換어음의 發行人에 관하여, 1) 發行人과 支給人이 同一人이거나, 2) 發行人이 換어음의 支給을 위한 提示를 받는 者이거나, 3) 發行人이 支給을 取消하였거나 또는 4) 支給人이나 引受人이 換어음을 引受 또는 支給할 義務가 없는 경우.

(d) 背書人에 관하여, 背書人이 證券의 支給을 위한 提示를 받는 者인 경우.

(e) 引受 또는 支給을 위한 提示가 第49條 또는 第54條 第2項에 따라 免除된 경우.

第62條 ① 換어음이 引受拒絕이나 支給拒絕된 경우에는 發行人, 背書人과 그들의 保證人에게 適法한 拒絕의 通知를 하여야 한다.

② 約束어음이 支給拒絕된 경우에는 背書人과 그의 保證人에게 適法한 拒絕의 通知를 하여야 한다.

③ 通知는 所持人이나 通知를 받은 모든 當事者 또는 證券의 支給을 强制 당할 수 있는 그 밖의 當事者가 이를 할 수 있다.

④ 通知는 通知를 받은 當事者에 대하여 證券上 遡求權을 가지는 모든 當事者의 利益을 위하여 그 效力을 가진다.

第63條 拒絕의 通知는 書面으로 또는 口頭로 할 수 있고, 그 內容은 證券의 同一性을 명백히 하고 證券이 不渡가 되었다는 뜻을 表示하는 어떠한 文言으로도 할 수 있다. 不渡가 된 證券을 返還하는 것은 충분한 通知가 된다.

第64條 拒絕의 通知는 다음에 이은 2 去來日 안에 하여야 한다.

(a) 拒絕證書作成日字 또는 拒絕證書의 作成이 免除된 경우에는 拒絕日字.

(b) 다른 當事者로부터 通知를 받은 날.

第65條 ① 拒絕通知의 遲滯가 所持人의 責任없는 事由로 생겼을 때에는 그 遲滯의 責任은 免除된다. 遲滯의 原因이 없어진 경우에 通知는 상당한 注意로써 하여야 한다.

② 拒絕의 通知는 다음의 경우에는 免除된다.

(a) 發行人, 背書人 또는 保證人이 明示 또는 默示로 拒絕通知를 拋棄한 때, 拋棄는 拋棄한 當事者만을 拘束한다.

(b) 通知의 遲滯原因이 通知하였어야 할 마지막 날 이후 30日 이상 계속되는 때.

(c) 換어음의 發行人에 관하여, 發行人과 支給人이 同一人이거나 發行人이 換어음의 引受 또는 支給을 위한 提示를 받아야 하는 者인 때, 또는 發行人이 支給을 取消한 때, 또는 支給人이나 引受人이 換어음을 引受하거나 支給할 義務가 없을 때.

(d) 背書人에 관하여, 背書人이 證券의 支給을 위한 提示를 받아야 하는 者인 때.

第66條 適法한 拒絕의 通知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所持人은 [損害의 總額이 證券金額을 超過하지 아니하는 한] 發行人, 背書人과 그들의 保證人에게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입은 모든 損害를 賠償할 責任을 진다.

第67條 所持人은 모든 責任있는 當事者로부터 다음의 金額을 求償받을 수 있다.

(a) 滿期에는 證券金額.

(b) 滿期 후에는 證券金額, 支給場所 [所持人이 住所 또는 營業所를 가지고 있는 場所]에서 有效한 公正割引率을 超過하는 年 (・・・)分의 率로 日數 및 1年 (365)日에 따라 計算된 利子 및 拒絕證書作成費用과 通知費用.

(c) 滿期 전에는 所持人이 住所나 營業所를 가지고 있는 場所에서 遡求權을 행사한 날에 有效한 公正割引率로 計算하여, 支給하는 날로부터 滿期까지의 割引額을 控除한 換어음金額.

第68條 證券을 引受하여 支給하는 각 當事者는 自己에게 責任이 있는 當事者로부터 다음의 金額을 求償받을 수 있다.

(a) 自己가 第67條의 規定에 따라 支給할 義務를 진 모든 金額.

(b) 金額에 대하여 支給한 날로부터 支給場所에서 法律上 허용되는 最高率로 計算된 利子.

(c) 自己가 負擔한 모든 費用.

第6部　責任의 免除

第1節　通　　則

第69條 ① 證券上 當事者의 責任은 다음의 事由에 의하여 免除된다.

(a) 第70條 내지 第75條 또는 第80條에 따른 支給.

(b) 第76條에 따른 抛棄.

(c) 第77條에 따른 前者에 의한 證券의 再取得.

(d) 第78條 第1項에 따른 前者의 免責.

(e) 第40條 第2項에 따른 當事者의 制限引受에 대한 不同意.

② 當事者는 또한 金錢의 支給에 대한 自己의 契約上 責任을 免除시키는 行爲 또는 合意에 따라 證券上 責任이 免除된다.

第2節　支　　給

第70條 ① 각 當事者는 所持人人이나 後者에게 第67條 또는 第68條에 따라 支給하여야 할 金額을 支給한 때에 證券上 責任이 免除된다.

② 前項에 따라 證券의 支給을 받은 者는 領收의 뜻을 記載한 證券과 公正證書을 支給하는 者에게 交付하여야 한다.

第71條 ① 所持人은 支給人, 引受人 또는 作成人으로부터 一部支給을 받을 수 있다. 一部支給을 받는 경우에는

(a) 引受人 또는 作成人은 支給額의 限度에서 證券上 責任이 免除된다.

(b) 證券은 未支給額에 관하여는 支給拒絕이 있은 것으로 본다.

② 一部支給한 支給人, 引受人 또는 作成人은 그 支給한 뜻을 證券에 記載하고 領收證을 交付할 것을 請求할 수 있다.

③ 證券이 一部支給된 경우 未支給額을 支給한 當事者는 證券上 責任이 免除되며 支給을 받은 者는 領收의 뜻을 記載한 證券과 公正證書를 支給하는 當事者에게 交付하여야 한다.

第72條 ① 所持人은 第53條 (f)에 따라 證券을 適法하게 支給을 위하여 提示한 場所 이외의 다른 場所에서 支給받을 것을 거부할 수 있다.

② [支給이 第53條 (f)에 따라 證券이 適法하게 提示된 場所에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證券은 支給拒絕이 있은 것으로 본다.]

第73條 ① 證券이 金額에 관하여 중대하게 變造되었을 경우 變造의 事實을 알지 못하고 變造된 文言에 따라 證券을 支給한 者는 證券을 變造한 當事者 또는 證券을 讓渡하거나 流通할 당시 變造의 事實을 알지 못한 當事者를 제외한 그 후의 모든 當事者로부터 變造로 증가된 金額을 求償할 權利를 가진다.

② 第29條 第2項에 規定된 중대한 變造에 있어서는 變造의 事實을 알지 못하고 變造된 文言에 따라 證券을 支給한 者는 證券을 變造한 者 또는 證券을 讓渡하거나 流通할 당시 變造의 事實을 알지 못한 當事者를 제외한 그 후의 모든 當事者로부터 自己가 支給한 金額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③ 發行人이나 作成人의 署名이 僞造된 경우 僞造의 事實을 알지 못하고 證券을 支給한 者는 發行人이나 作成人의 署名을 僞造한 者 또는 證券을 讓渡하거나 流通할 당시 僞造의 事實을 알지 못한 當事者를 제외한 發行人이나 作成人의 모든 後者로부터 自己가 支給한 金額을 求償할 權利를 가진다.

第74條(選擇 A) ① (a) 證券이 支給하는 國家의 通貨가 아닌 通貨로 支給하도록 作成된 경우 支給金額은 支給하는 國家의 通貨로 支給할 수 있다.

(b) 그러한 證券이 支給하는 國家의 通貨로 支給되는 때 그 支給金額은 滿期日의 換率에 따라 計算하거나 또는 證券上 特定되어 있으면 그 特定된 換率에 따라 計算하여야 한다.

② 그러한 證券이 引受拒絕이나 支給拒絕에 의하여 不渡가 된 경우에는 支給金額은 支給하는 國家의 通貨로 支給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所持人은 自己의 選擇에 따라 責任지는 當事者에게 支給金額을 拒絕日字, 滿期日 또는 支給日字의 換率에 따라 計算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前2項의 規定은 發行人 또는 作成人이 證券에 支給을 特定通貨로 하도록 정한 때에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74條(選擇 B) ① 證券이 支給하는 國家의 通貨가 아닌 通貨로 支給하도록 作成된 경우 支給金額은 證券에 指定된 通貨로 支給하여야 한다.

② (a) 前項의 規定은 發行人 또는 作成人이 證券에 支給하는 國家의 通貨로 支給한다는 뜻을 정한 때에는 適用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는 支給金額은 滿期日의 換率에 따라 計算하거나 또는 證券上 特定되어 있으면 그 特定된 換率에 따라 計算하여야 한다.

(b) 그러한 約定이 있는 證券이 引受拒絕이나 支給拒絕에 의하여 不渡가 된 경우에는 所持人은 自己의 選擇에 따라 責任지는 當事者에게 支給金額을 拒絕日字, 滿期日 또는 支給日字의 換率에 따라 計算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第75條 ① [當事者가 第67條나 第68條에 따라 支給하여야 할 金額의 支給을 滿期 또는 滿期 후에 所持人에게 提供하고 所持人이 그러한 支給을 받기를 拒絕한 경우에는

(a) 支給을 提供한 當事者는 支給이 提供된 날 이후의 모든 利子나 費用에 대하여 責任을 지지 아니한다.

(b) 支給을 提供한 當事者에 대하여 遡求權을 가진 모든 當事者는 그러한 利子나 費用에 대하여 責任을 지지 아니한다.

② 前項(b)의 規定은 所持人에게 支給을 提供한 者가 支給人인 경우에도 適用한다.]

第3節 拋 棄

第76條 ① 각 當事者는 所持人이 滿期 또는 滿期 후에 그 當事者에 대한 權利를 無條件 拋棄한다는 것을 證券에 기재한 경우에는 證券上 責任이 免除된다.

② 그러한 拋棄는 證券上 自己의 權利를 拋棄한 當事者의 證券에 대한 權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第4節 前者에 의한 再取得

第77條 適法하게 證券의 所持人이 된 責任있는 각 當事者는 自己에 대하여 遡求權을 가졌던 모든 當事者에 대한 證券上의 責任이 免除된다.

第5節 前者의 免責

第78條 ① 어떤 當事者가 證券上 責任이 免除된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 遡求權을 가진 모든 當事者의 責任도 免除된다.

② 所持人과 證券上 責任있는 當事者 사이에 일부 또는 전부의 責任을 免除하기에 이르지 아니한 合意는 다른 當事者의 權利와 責任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第7部 提訴期間(時效)

第79條 [이 法은 國際證券下에서 일어나는 提訴期間 및 消滅時效에 관한 條文을 포함할 것이 期待된

(1) 國際物品賣買에 있어서의 提訴期限에 관한 Working Group의 報告書 참조. 또 1976年 2月의 Working Group 討議에서 이 條文은 成案되었다.

다. 그러한 條文의 準備는 相異한 法體系들의 여러 立場[11]을 調和시키는 어려운 問題를 야기시키며 보다 깊은 硏究를 필요로 한다. 이 問題에 관한 提案들이 적절한 過程을 거쳐 實務委員會(the Working Group)에 提出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第8部　喪失한 證券

第80條 ① 證券을 喪失한 경우 [毁損, 不法 留置 그 밖에 의하여] 證券을 喪失한 者는 이 條 第2項과 第3項의 規定에 따라 自己가 證券을 占有하였더라면 가지게 될 支給請求權과 동일한 權利를 가진다.

② (a) 喪失한 證券의 支給을 請求하는 者는 自己가 支給을 請求하는 當事者가 滿足하도록 다음의 事實을 書面으로 立證하여야 한다.

1) 自己가 證券을 占有하던 당시 支給請求權을 가졌던 事實

2) 證券의 提出을 방해하는 事由

3) 喪失한 證券의 內容

(b) 喪失한 證券의 支給을 請求받은 當事者는 支給을 請求하는 者에 대하여 喪失한 證券의 그 후의 支給에서 생길 수 있는 모든 損害를 自己에게 賠償하기 위한 擔保의 提供을 요구할 수 있다.

(c) 擔保의 種類와 條件은 支給을 請求하는 者와 支給을 請求받은 者 사이의 合意로 決定한다. 그러한 合意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擔保의 種類와 條件은 法院이 이를 決定한다.

(d) 擔保를 提供할 수 없는 경우 法院은 支給을 請求받은 當事者에 대하여 喪失한 證券의 金額 및 第67條와 第68條에 따라 請求할 수 있는 모든 利子와 費用을 法院이나 다른 所管官廳에 供託할 것을 命할 수 있다. 供託은 支給을 請求하는 者에 대한 支給으로 본다.

第81條 ① 喪失한 證券을 支給하고 그 후 證券이 다른 者에 의하여 支給을 위한 提示를 받은 當事者는 自己가 支給한 者에게 그러한 提示의 事實을 通知하여야 한다.

② 通知는 證券이 提示된 날 또는 이에 이은 2去來日 중의 하루에 하여야 하며 證券을 提示한 者의 姓名 및 提示日字와 場所를 알려야 한다.

③ 通知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喪失한 證券을 支給한 者는 自己가 支給한 者가 그러한 게으름으로 입게 된 모든 損害에 대하여(損害의 總額이 證券金額을 超過하지 아니하는 한) 責任을 진다.

第82條 ① 喪失한 證券을 支給하고 그 후에 證券上 責任이 免除된 각 當事者는 다음과 같은 權利를 가진다.

(a) 擔保가 提供된 경우 擔保를 實行할 權利.

(b) 金額이 法院이나 다른 所管官廳에 供託된 경우 供託된 金額의 返還을 請求할 權利.

② 金額이 法院이나 다른 所管官廳에 供託되었고 第70條에 規定한 期間 안에 前項 (b)에 따른 返還請求도 없었을 경우 金額이 自己의 利益을 위하여 供託된 者는 供託을 命한 法院에 대하여 供託된 金額을 自己에게 支給하도록 命한 것을 要請할 수 있다. 法院은 法院이 要求하는 內容과 條件에 따라 그 要請을 許可하여야 한다.

第83條 喪失한 證券의 支給을 請求하는 者는 喪失한 證券의 寫本 또는 第1條 第2項 또는 第3項에 規定된 要件들에 관한 喪失한 證券의 要件을 立證하는 書類를 사용하여 支給拒絕에 의한 不渡에 대하여 拒絕證書를 適法하게 作成한다.

第84條 第80條의 規定에 따라 喪失한 證券의 支給을 받은 者는 支給하는 者에게 自己가 받은 第80條 第2項 (a) 3)에서 要求하는 書類를 交付하여야 한다.

第85條 第80條의 規定에 따라 喪失한 證券을 支給한 각 當事者는 그 支給을 適法하게 立證함으로써 證券을 占有하였더라면 가졌을 權利와 동일한 權利를 가진다.

第86條 (a) 證券을 毁損, 不法留置 그 밖에 의하여 受取人이나 그의 推尋委任被背書人이 喪失한 경우 受取人은 自己나 自己의 推尋委任被背書人이 證券을 喪失한 事實을 適法하게 立證함으로써 發行人

이나 作成人에게 喪失한 證券의 寫本의 發行을 要求할 權利를 가진다. 發行人이나 作成人은 그 寫本을 發行함으로써 受取人에 대하여 喪失한 證券의 그 후의 支給으로 인하여 받을 수 있는 모든 損害를 賠償받기 위하여 擔保의 提供을 요구할 수 있다.

(b) 擔保의 種類와 條件은 喪失한 證券의 寫本을 發行하는 發行人이나 作成人과 受取人 사이의 合意로 決定한다. 그러한 合意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擔保의 種類와 條件은 法院이 이를 決定한다.

(c) 1) 發行人이나 作成人이 喪失한 換어음이나 約束어음의 寫本을 發行할 때에 證券에 「寫本」이라는 文句(또는 이와 비슷한 文言)을 記載할 수 있다.

2) 證券에 寫本임이 明記되어 있는 경우 그것을 喪失한 換어음이나 約束어음의 寫本이 推尋의 目的 이외에는 流通될 수 없을 것을 條件으로 이 法에 따른 證券으로 본다.

(d) 發行人이나 作成人이 喪失한 證券의 寫本을 發行할 것을 拒絕하면, 發行人이나 作成人은 (損害의 總額이 喪失한 證券의 金額을 超過하지 아니하는 한) 受取人이 拒絕로 인하여 받을 수 있는 모든 損害에 대하여 責任을 지게 된다.]